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참여기관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소송의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진행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주관기관에서 1,2단계를 담당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A 대학이 3번째 “세포수준 (in vitro) 독성 및 생리활성 확인” 단계를, 참여기관 B 대학(원고)는 4번째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 (in vivo)”

단계와 5번째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단계를 각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별개의 선행연구에서 주관기관이 개발한 천연허브 발효물이 어느 정도 세포수준에서의 항염증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기관 원고가 담당했던 역할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발효물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in vivo)” 시험을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한 후(위 4번째 단계 연구), 나아가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위 5번째 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과제의 진행 중 예상과 달리 기대하였던 항염증 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원고가 수행한 동물실험에서 발효물의 항염증 효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행 연구단계를 담당하는 참여기관의 책임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관의 책임을 냉정하게 묻는 입장입니다.

가) 원고의 주장

① 주관기관인 C가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원고는 참여기관으로서 개발된 원료물질의 활성만을 평가하는 것인데, 과제 수행 결과가 미흡한 것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② 원고가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L'를 2차년도 협약기간 내에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주관기관이 실험을 위한 사료를 늦게 공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면역 및 항염 활성 평가를 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할 협약상의 의무가 있다.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여기관의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약 변경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항당뇨 및 항비만 활성 평가로 과제 수행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여기관의 책임자로서 협약 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소송,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기술료, 대응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